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)의 2018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전)	비고
	건수	금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지적사항 없음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지적사항 없음	
3. 학교 관련			지적사항 없음	
4. 산학협력단 관련			지적사항 없음	
계			지적사항 없음	

- 붙임 1.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 2. 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9. 4. 26.

학교법인 신 동 아 학 원

감 사 이철하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554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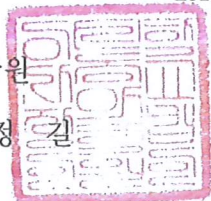
감 사 곽종우

피감사 기관장

2019. 4. .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

이 사 장 홍정길



피감사 기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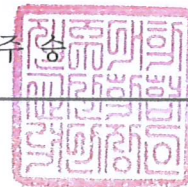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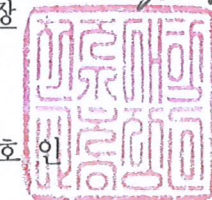
2019. 4. .

전주대학교

총 장 이 호 인

산학협력단

단 장 변 주 승

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(전주대학교)의 2018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전주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(전주대학교)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9년 4월 26 일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

감사 이 천 화

감사 박 종 훈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총무처장

성명 한 남 희